

의안번호	제3호
의결 연월일	2026년 2월 5일 (제33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발 의 자	박병훈 의원 등 3인
제출연월일	2026. 1. 23.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박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의자 : 박병훈·정옥균·심정수 의원

1. 제정이유

-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 향상과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소형동물의 피해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형동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안 제3조, 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의 추락·고립·폐사 등의 피해 및 동물 찾길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조류,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동물 찾길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3.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4.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형동물 등의 피해 저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 사업의 추진) 군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이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
2. 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3.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4. 동물 찾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5. 그 밖에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권고) 군수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구조 활동 지원) 군수는 고립되거나 부상당한 소형동물 등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